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2.
기획재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23일 박수영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2024.11.15.) 상정

제2차 조세소위(2024.11.18.) 상정

제3차 조세소위(2024.11.19.) 상정

제4차 조세소위(2024.11.20.) 상정

제5차 조세소위(2024.11.21.) 상정

제6차 조세소위(2024.11.22.)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2025. 2.11.) 상정,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5. 2.18.)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

(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수영의원)

현행법은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당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보유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상환에 사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3년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3년간 균등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채무를 상환하려는 기업이 상환을 위해 양도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도차익으로 인하여 법인세 누진세율 중 높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채무상환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이러한 특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내국법인 자체에 채무상환을 위한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해당 내국법인(이하 “피출자법인”이라 함)에 출자한 내국법인(이하 “출자법인”이라 함)이 그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어 기업의 채무상환과 구조조정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피출자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출자법인의 보유자산 양도차익을 3년간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3년

간 균등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수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동 개정안 등 56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소수의견의 요지

개정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었음.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에 더하여 해외 건

설업에 한정된 출자전환 손금산입에 대한 과세특례를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것은 업종 간 과세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조세특례가 특정 업종에 집중될 경우 반도체, 철강, 배터리 등 유사한 요구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조세제도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또한, 피출자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출자법인의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역시 기존의 과세특례를 지나치게 확장할 가능성이 있어, 불필요한 세제지원이 될 수 있음.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은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므로 추후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대한 지원은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